

무배당 확정금리 저축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인서

무배당 확정금리 저축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22년 10월 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남 효 성 (인)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확정금리 저축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①확정금리 ②저축보험 ③

※ 동 상품은 상품 명칭에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 및 계약자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①, ② 또는 ③에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5년만기	일시납	만 15세~80세	일시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납입보험료는 계약시점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본보험료로 한다.

- 기본보험료 : 1,000 만원 이상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 개월부터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연 12 회에 한하여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1 회 인출 최고한도는 인출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최고한도로 하고,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인출 후 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의 2% 미만일 수 없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적립액의 인출로 인하여 장래의 보장계약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다.

다. 적립액을 인출한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적립액(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만기보험금 또는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아래의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도달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유지보너스 해당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 적립액에 추가로 적립한다.

유지보너스 발생일	유지보너스 해당금액
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 연계계약해당일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2%
계약일로부터 5년 경과시점 연계계약해당일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

나. '가'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기본보험료를 말하며,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유지보너스 금액을 계산한다.

14. 기타

가.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나. 연금전환에 관한 사항

(1) 무배당 하나로연결된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해서 계산된다.

(2) 무배당 하나로연결된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 시 무배당 하나로연결된연금전환특약이 명칭이 변경되어 있는 경우 명칭이 변경된 특약을 따른다.

(3) 연금전환은 전환시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을 따른다.

다.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라.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1) 이 보험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 4-14 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한다.

(2) 이 보험의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 대비 99%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별첨 제 1 호)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 2 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 3 호)

보험계약 부활(효력회복)청약서의 서식